

[] 개시 예정일 변경
치유�휴직 [] 기간 연장·단축 신청서
[] 철회

※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하는 곳에 “√” 표시를 합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10일
------	------	----------

치유툄직 신청 근로자	성명	생년월일
	주소 및 연락처 (전화번호:) (휴대전화:)	
종전 치유툄직 신청사항	신청일	_____ (치유툄직 통지서 통지일: _____)
	치유툄직 기간	_____ ~ _____ (치유툄직 개시 예정일: _____)
치유툄직 신청 변경사항	[] 치유툄직 개시 예정일 변경 - 변경하려는 치유툄직 개시 예정일: _____ (변경된 치유툄직 기간: _____ ~ _____) (변경된 근무 복귀 희망일: _____) * 변경되는 경우만 기재	
	[] 치유툄직 기간 연장 [] 치유툄직 기간 단축 - 변경하려는 치유툄직 기간: _____ ~ _____ (변경된 근무 복귀 희망일: _____) * 변경되는 경우만 기재	
	[] 치유툄직 철회	

「12·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유툄직 [] 개시 예정일 변경 [] 기간 연장 [] 기간 단축 [] 철회를(을)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(서명 또는 인)

사 업 주 귀 하

첨부서류	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·29여객기참사로 인한 신체적·정신적 피해를 치유툄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1. 치유툄직 개시 예정일 변경 등의 사유로 「12·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 시행 후 1년이 경과하여 치유툄직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 2. 「12·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	수수료 없 음
------	--	---------------

유의사항	
치유툄직을 신청한 근로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유툄직 변경 신청서를 다음 구분에 따른 날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. 1. 치유툄직 개시 예정일을 변경하려는 경우: 변경하려는 치유툄직 개시 예정일 2. 치유툄직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: 원래의 치유툄직 기간 만료일 3. 치유툄직 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: 단축 예정 치유툄직 기간 만료일 4. 치유툄직을 철회하려는 경우: 치유툄직 기간 개시 예정일	

근로자 확인서

1. 본인은 「12·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피해자로서 치유�휴직 []개시 예정일 변경 []기간 연장 []기간 단축 []철회 를(을) 신청하기 위하여 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2. 본인은 사업주가 본인의 치유�휴직 개시 예정일 변경, 치유�휴직 기간 연장·단축 또는 치유�휴직 철회를 허용하고 사업주가 고용 유지비용을 신청하기 위하여 이 신청서를 증명자료로 활용하는 데에 동의합니다.
3. 본인은 성명 및 생년월일의 수집·이용과 관련하여 제2호에 따라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하는 행정기관이 향후 고용유지비용 지급신청서의 처리에 필요한 사실관계 확인 등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이용한다는 설명을 들었으며, 정상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본인의 위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것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.
4. 본인은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 수령과 관련하여 해당 행정기관으로부터 본인의 치유�휴직 실시 등의 사실관계 확인 및 고용유지 비용 지급신청의 부정행위 여부 확인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등에 대한 협조 요청을 받는 경우 적극 협조할 것임을 확인합니다.
5. 신청인은 위 내용을 이해하고 이 신청서를 제출함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근로자)

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

→

접수 및 확인

→

신청서 처리

→

처리결과 통지

→

수령

신청인

처리기관: 사업주